

광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5363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김정웅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현길환

변론 종결2021. 5. 26.

판결 선고2021. 6. 16.

주 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2018. 11. 26.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170,371,7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170,371,746원의 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2018. 11. 26.자 채무변제계약을 184,568,414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다.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의 공사계약

1) 피고는 2017. 10. 2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전남 해남군 E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93,817,800원, 이행(계약)보증금 공사대금의
10%,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의 2%, 공사기간 2017. 11. 1.부터 2019. 2. 28.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이사 F은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선금금 유용 및 계약보증서, 선금보증서 제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8. 4. 2.경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C에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3) C은 2018. 4. 3.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관련 소송 경과

1) C은 2018. 4. 24. 원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F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및 원고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0. 8. 반소로써 C에게
원고가 지급한 선금금 중 기성고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원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67(본소), 2019가합58358(반소)].

2) 위 법원은 2019. 12. 27. 이 사건 도급계약이 C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C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반소에 대하여 "C은 원고에게 482,524,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C이 반소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20나20387(본소), 2020나20394(반소)], 원고는 항소심에서 선급금 반환청구를 확장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감축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0. 7. "C은 원고에게 401,593,171원과 그중 307,731,583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93,861,588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각 2020. 10.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 한다).

4) 관련 소송의 판결확정 후 원고는 2020. 11. 17. C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956), 이 법원은 2021. 2. 5. "관련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C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4,462,547원(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과 피고의 채무변제계약 등

1) C과 피고는 2018. 11. 26. 'C이 피고에게 2,177,007,480원을 변제기 2018. 12. 25., 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G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8년 251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피고와 C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 28. C이 H의 C에 대한 가압류(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090)의 집행을 취소하고자 2019. 7. 15. 광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6720호로 공탁한 2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1092)을 받았다.

3)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2020. 1. 31. 위 공탁사건에 대하여 H, 피고의 압류 등이 경합됨을 이유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20. 4. 21.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

4) 한편, H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H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2020. 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7884, 광주고등법원 2019나23878).

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185호로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12. 원고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252), 위 법원은 2020. 6. 16.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6) 위 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에서 공탁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10,290,327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26, 30, 3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I은행, IBK기업은행, J은행, K은행, L조합, M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기타집행3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가. 원고의 선급금 반환채권 등

1) C이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가 2018. 4.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C에 도달한 사실, C이 2018. 4. 3.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렇다면 원고는 그 무렵부터 C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청구권 및 C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 전 수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체결된 2018. 11. 26. 이전에 이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3) 나아가 원고의 채권액을 계산하여 보면,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401,593,171원과 그중 307,731,583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93,861,588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각 2020. 10.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관련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의 채무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을 추심 내지 전부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1	2020타채 50679	N	55,000,000	2020. 1. 23.	32,400
2	2020타채 54254	H	17,015,183	2020. 3. 18.	1,132,400
3	2020타채 55247	O	220,219,979	2020. 3. 23.	232,400
합계	292,235,162				

4) C의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합계 292,235,162원은 원고와 C 사이에 변제충당 방법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 소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이를

집행비용,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1)

2019.11 .13.	307,731, 583	6. 00	2019.11 .13.	2020.03 .23.	6. 00	3,005, 568	1	3,005,56 8	0	307,731, 583
						2	64,967,5 00	64,967,5 00	242,764, 083	
2020.03 .18.	17,015,1 83	6. 00	2019.11 .13.	2020.03 .18.	6. 00	1,921, 905	1	1,921,90 5	0	242,764, 083
						2	15,093,2 78	15,093,2 78	227,670, 805	
2020.03 .23.	220,219, 979	6. 00	2019.11 .13.	2020.03 .23.	6. 00	3,026, 988	1	3,026,98 8	0	227,670, 805
						2	217,192, 991	217,192, 991	10,477,8 14	

5) 결국 원고의 C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권 등은 "22,008,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93,861,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각 2020. 10.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게 된다.

나. 원고의 관련 소송 소송비용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이후로서 관련 소송이 확정된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20. 11. 17.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이전에 소송비용액 성립의 기초가 되는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나아가 C이 2018. 4. 24.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C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관련 사건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채권이 현실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 채권 44,462,547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원고의 추심명령 소송비용

1)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2351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집행비용

1,134,400원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2020. 3. 10. 관련 사건의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소비임치액 또는 명의신탁액 상당의 반환채권 중 202,839,31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231)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이전에 원고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의 보전을 위한 집행비용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집행비용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C의 무자력

1) 이 법원의 북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G공증인합동사무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I은행, IBK기업은행, J은행, K은행, L조합, M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P 세무사무서, 광주지방법원 기타집행3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C은, ① 차량 1대 외에 달리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②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으나 C의 계좌에는 피고로부터 금원이 송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방식으로 자금이 유통되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전후로 C의 모든 계좌에 수천만 원 이상의 금원이 장기간 예치된 적이 없었던 사실, ③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 등 외에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7년 제1698호	20,000,000	2017. 10. 11.
2	2017년 제1804호	100,000,000	2017. 10. 26.
3	2017년 제2014호	180,693,000	2017. 11. 27.
4	2017년 제2015호	38,000,000	2017. 11. 27.
5	2017년 제2188호	44,000,000	2017. 12. 21.
6	2018년 제295호	10,000,000	2018. 2. 13.
7	2018년 제296호	7,700,000	2018. 2. 13.
8	2018년 제609호	20,000,000	2018. 4. 3.
9	2018년 제681호	5,000,000	2018. 4. 6.
10	2018년 제752호	310,000,000	2018. 4. 11.
11	2018년 제1081호	17,113,209	2018. 5. 3.
12	2018년 제1082호	100,000,000	2018. 5. 3.
13	2018년 제1153호	69,886,510	2018. 5. 14.
14	2018년 제1154호	100,000,000	2018. 5. 14.
15	2018년 제1498호	1,120,904,400	2018. 6. 21.
16	2018년 제2133호	12,800,000	2018. 9. 11.
17	2018년 제2219호	561,130,500	2018. 9. 27.
18	2018년 제2253호	30,700,000	2018. 10. 4.
19	2018년 제2340호	23,000,000	2018. 10. 23.
20	2018년 제2398호	30,000,000	2018. 11. 5.
21	2018년 제2399호	5,000,000	2018. 11. 5.
22	2018년 제2515호3)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2,177,007,480	2018. 11. 26.

1	2017년 제1698호	20,000,000	2017. 10. 11.
합계	6,006,325,218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이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C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C이 피고에게 2,177,007,480원을 변제기 2018. 12. 25., 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및 피고는 2020. 1. 28. 이 사건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이 2019. 7. 15. H의 C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고자 광주지방법원 2019년금제6720호로 공탁한 210,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10,290,327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실질에 있어 C이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및 C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C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까지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고에게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I은행, IBK 기업은행, J은행, K은행, L조합, M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로부터 금원이 송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방식으로 C의 자금이 유통되고, C에게 피고에게 금원이 지급하는 등 C과 피고가 수년간 방대한 횡수의 금융거래를 하여온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가합3339)에서 위 법원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Q이 C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취소의 범위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1. 5. 26.)을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권 등(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채권)과 이 사건 소송비용 채권액을 계산하여 보면, 170,371,746원(= 22,008,050원 + 2,268,336원 + 93,861,588원 + 7,771,225원 + 이 사건 소송비용 44,462,547원)이 되고, 그 중 선급금 반환채권 등의 계산 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22,008,050	5%/12%	2020.03.24.	2021.05.26.	2,268,336
93,861,588	2020.08.19.	2021.05.26.	7,771,225	

2021.05.26.	$22,008,050 \times (0.05 \times (198/365) + 0.12 \times (231/365))$ 【2020.03.24.~2020.10.07. (5%), 2020.10.08.~2021.05.26. (12%)】
$93,861,588 \times (0.05 \times (50/365) + 0.12 \times (231/365))$ 【2020.08.19.~2020.10.07. (5%), 2020.10.08.~2021.05.26. (12%)】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취득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170,371,7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배당금의 지급청구권 중 170,371,746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이해림

- 1) 계산의 편의상 변제액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총당한다.
- 2) 모두 G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작성되었다.
- 3)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